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5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김문수·허 영·고민정

박지원 · 장종태 · 이광희

정일영 · 임광현 · 김 윤

안태준 · 허성무 · 이재관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사회적 고립이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,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,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미흡한 상태임.

이에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또한 실태조사 실시, 기본계획수립,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예방·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의 제명을 "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·관리에 관한 법률"로 변경함(안 제명).
- 나. 이 법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다. "사회적 고립"이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,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함(안 제2조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시사 등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·공표하여야 하고,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, 통계 분석·조사 업무를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10조 및 제12조).
- 바.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·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,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- 사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

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 회를 설치함(안 제15조).

아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 험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의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고,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음(안 제18조).

법률 제 호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 ·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사회적 고립"이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,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.
- 2. "고독사"란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고독사위험자"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

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.

- 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 -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 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의 발굴·지원, 고독사의 현황 파악과 예방·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과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

제6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- 2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- 3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4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관련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5. 청소년층·청년층·중년층·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
- 6.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
- 7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에 대한 교육
- 8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에 대한 조사 · 연구
- 9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
- 10.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·조달방안 및 분배 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

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
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 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국회에 대한 보고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

단체의 장(이하 "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"이라 한다)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장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대책 등

- 제10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·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,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와 공개, 제2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(이하 "형사사법정보"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(이하 "제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(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 ·연구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에서 같다)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·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"정보보호조치"라 한다)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 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- 제12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 분석과 조사·연구 등)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고,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・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·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,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·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 -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
 - 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
 - 3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

- 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,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,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
- 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
- 6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·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・이용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
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 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- 1.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.
- ⑧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

정한다.

- 제15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) ① 사회적 고립 및 고독 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 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 - 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(해당 시·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)
 - 3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・홍보) 국가 및 지방

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제17조(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 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- 3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·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상담·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상담·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민관협력)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 지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 시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,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- 제19조(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사회적 고립 상 태에 있는 사람, 고독사한 사람,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·친 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.
- 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,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·확보와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21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보조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2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제5장 벌칙

- 제23조(벌칙)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의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.
- 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이 법 제1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